

제271회대구광역시의회(정례회)

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(부록)

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

【검토보고서】

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25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교통국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
2. 제안이유

-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과다 요금체계 불만해소와 어린이회관 공영 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
- 또한 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생활숙박시설, 다가구 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(원룸형 주택)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조정하려고 함.

(안 별표 1의 비고 7 및 8)

-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과다요금에 대한 민원불만 해소를 위해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주차요금을 인하
-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에 따라 인상

○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강화하려고 함.

(안 별표2 제3호 및 제5호)

-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강화
- 다가구주택(30㎡)은 면적기준에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
-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.9대(전용면적 30㎡ 미만인 경우에는 0.7대) 신설

4. 참고사항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조례안 참조

○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, 「주택법」, 「주택법 시행령」
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- 가) 예고기간 : 2019. 9. 20. ~ 2019. 10. 10.
- 나) 예고결과 : 1건(대구시건축사회) 조례안 참조
- 2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(원안가결)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여성가족정책과(개선사항 없음)
- 4) 부패영향평가 : 감사관(개선의견 없음)
- 5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조례안 참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및 대구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.
- 안 별표1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안 별표1 중 비고의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인상하고,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요금은 인하하였음.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
동대구역 맞이주차장	최초 30분, 10분 초과(각1,000원) 1시간~2시간 : 30,000원 2시간 초과 : 50,000원	최초 20분 무료 20분초과시 : 10분당 1,000원 (일 한도 5만원)
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	2시간 이내 : 1,000원 2시간 이상 : 2,000원	2시간 이내 : 1,000원 2시간~6시간 : 2,000원 6시간~7시간 : 5,000원 7시간 초과 : 10,000원

-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경우 과다 요금체계에 대한 시민불만이 있고,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**안 별표1**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.
- **안 별표2**는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), 다가구주택,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 주택)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도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음.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
숙박시설 (생활숙박시설)	150㎡당 1대	150㎡당 1대 다만,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
다가구주택	세대당 1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 이하 0.5대 이상)	세대당 1대 이상
도시형생활주택 (원룸형 주택)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세대당 0.6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 미만 0.5대 이상)	세대당 0.9대 이상(30㎡ 미만은 0.7대)

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 제1항은 단독주택·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는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**안 별표2**에서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)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호실 당 1대와 세대 당 1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 주택)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0.9대 이상(30㎡ 미만은 0.7대)으로 한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범위를 정한 것임.

□ 종합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동대구역과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,
-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보행자와 거주민의 안전확보 및 사회적 비용절감,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
- 다만,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에 있어 규모와 세대수가 비교적 큰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 주택)과의 형평성 결여, 불법 건축물 양산 및 소규모주택의 재건축, 리모델링 비용증가에 따른 건축 경기 악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므로
 -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도심 밀집 지역 주차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,
 -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 강화와 별개로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관련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-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붙임

특별·광역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

구 분	숙박시설 (생활숙박시설)	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아파트), 오피스텔	공동주택 (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)
대 구	시설면적 150㎡당 1대	세대당 1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이하 0.5대 이상)	세대당 0.6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이하 0.5대 이상)
서 울	시설면적 134㎡당 1대	세대당 1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이하 0.5대 이상) (전용면적 60㎡이하 0.8대 이상)	세대당 0.6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미만 0.5대 이상)
부 산	시설면적 134㎡당 1대	세대당 1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이하 0.5대 이상)	세대당 1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이하 0.5대 이상)
인 천	시설면적 134㎡당 1대 다만,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.	세대당 1대 이상	세대당 1대 이상
광 주	시설면적 134㎡당 1대	세대당 1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이하 0.5대 이상)	세대당 0.6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미만 0.5대 이상)
대 전	시설면적 134㎡당 1대	세대당 1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이하 0.5대 이상)	세대당 0.6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미만 0.5대 이상)
울 산	시설면적 134㎡당 1대	세대당 1대 이상	세대당 0.9대 이상 (전용면적 30㎡미만 0.7대 이상)

※ 인천·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특광역시 비슷한 상황